

연말정산 및 급여담당자를 위한 HIT THE SPOT SERIES 1

19.08.29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개정안 중
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되는 법률과 관련하여
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(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음)된 내용과
당초 정부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1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확대 (안)

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%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안은 폐기되고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% 공제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.

단,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로 사용분 금액은 전통시장사용분에 해당되어 40% 공제율이 적용됨에 유의.

| 정부 안 | | 국회통과 | | | | | | | |
|---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 확대 · (좌 동) ·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확대 - 제로페이 사용금액: 40% · (좌 동) · 제로페이 사용분 한도확대(전통시장 한도에 포함) 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폐기</p> (직불카드에 준하는 30% 적용 및 추가공제 적용안함)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항 목</th> <th>한도 추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통시장, 제로페이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대중교통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</td> <td>1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항 목 | | 한도 추가 | 전통시장, 제로페이 | 100만원 | 대중교통 | 100만원 |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| 100만원 |
| 항 목 | 한도 추가 | | | | | | | | |
| 전통시장, 제로페이 | 100만원 | | | | | | | | |
| 대중교통 | 100만원 | | | | | | | | |
|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| 100만원 | | | | | | | | |
| · '22.12.31. | | | | | | | | | |

2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 (안)

당초 정부안대로 국회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9년 귀속연말정산부터 이월기부금
→ 당해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 적용.

| 정부 안 | 국회통과 |
|--|----------------|
|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(과세기간) 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| 정부 (안) 원안대로 통과 |

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(안)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
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되어 19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2020.01.31.일까지 제출.

| 정부 안 | 국회통과 |
|--|----------------|
| 제출기한 연장 ·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* (상반기분) 7.31, (하반기분) 1.31 | 정부 (안) 원안대로 통과 |